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항공안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 〉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42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2207442)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항공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상향입법(안 제6조의2 신설)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7
다. 국토교통부 의견	10
2.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류 충돌 위험평가 시행 근거 마련(안 제6조의3 및 제6조의4 신설)	11
가. 개정안의 내용	11
나. 검토의견	15
다. 정부 의견	19
1) 국토교통부	19
2) 법제처	19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220744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용갑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 10.
3. 회 부 일 : 2025. 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 충돌사고로 무안공항에 불시착하여 179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항공 안전과 조류 충돌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항공 안전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는 항공안전위원회와 조류 충돌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는 각각 국토교통부 훈령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고, 위원장은 국민 안전이 매우 중요함에도 항공정책실장이 임명한 위원 중 호선하거나, 공항행정책관이 맡도록 하고 있음.

또 지방항공청장은 항공 안전을 위해 항공기와 항공 관련 사업체, 공항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와 조류 충돌 예방대책 및 조류 충돌 위험 평가 등의 업무는 모두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에게 미룬 채, 이

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조차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공항운영자인 한국공항공사는 무안공항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에 15년 전에 활동을 중단한 단체와 무안공항에서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 항공운송사업자를 위원 명단에 포함시키고, 정작 이번 참사를 유발한 제주항공은 불참했음에도 회의를 진행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하였음.

이에 제주항공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항공안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도록 위원회를 격상시킴(안 제6조의2).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심의·의결과 자문 등을 담당하는 조류 충돌 예방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차관이 맡도록 함(안 제6조의3).

다. 지방항공청장이 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항운영자는 매년 조류 충돌 위험평가 결과와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분기마다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항공청장은 공항운영자에게 개선명령이나 시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4).

Ⅲ. 검토의견

1. 항공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상향입법(안 제6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항공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항공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위원장(국토교통부장관)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회피·제척·기피를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의2(항공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항공안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항공기등¹⁾에 발생한 고장, 결함, 기능장애 및 정비,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관한

현행	개정안
	<u>사항</u> 4. 제58조제1항에 따른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공항시설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보안관리 및 기능유지 등에 관한 사항 6. 「공항시설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 및 제56조제5항에 따른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경 및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항공기사고·경량항공기사고·초경량비행장치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각부의 차관 2. 지방항공청장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 및 「한

현행	개정안
	<u>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사장</u> 4. <u>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u> 5. <u>항공안전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u> 6. <u>항공안전 정책수립에 필요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현장형 전문가로서 영향력이 인정되며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u> 7. <u>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③ <u>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며,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u> ④ <u>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사전 검토 및 위원회에서 위임한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u> ⑤ <u>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⑥ <u>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전의 심의를</u>

현행	개정안
	<u>회피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하여야 한다.</u> <u>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u> <u>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u> <u>3.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u>⑦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u> <u>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항공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라. 정비·수리·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된 항공기·발동기·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이하 “감항성”이라 한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 및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업무

나. 검토의견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방콕발 제주항공 2216편은 무안공항에 착륙기
어 장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동체 착륙하였고, 활주 중 활주로를 초
과하였으며, 방위각(Localizer²⁾) 시설물과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항공기가 전소하는 등 사
고가 발생하였음.

현재 국토교통부훈령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공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소속으로 항공안전위원회를 두고 있고, 동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함.

【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항공안전위원회 비교 】

구분	현행	개정안
근거	국토교통부 훈령	항공안전법
역할	자문	심의·의결
	1. 항공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 관련 제도 개선에 관 한 사항 3. 그 밖에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 으로서 항공정책실장이 요청하 는 사항	1.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연도 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항공기등에 발생한 고장, 결 함, 기능장애 및 정비,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기술 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및 항 공안전관리시스템 마련 및 운 용에 관한 사항 5.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보안관리 및 기능유지 등에

2)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위해 활주로와 기체의 방향각 측정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

구분	현행	개정안
		관한 사항 6.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장애물 및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경 및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항공기사고·경량항공기사고·초경량비행장치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구성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포함 20명 이상 25명 이내	위원장 1명 포함 30명 이내 (과반수 이상은 외부 관계 전문가)
	위원장,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항공정책실장이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1. 항공안전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항공안전 정책수립에 필요한 분야의 현장형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며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항공정책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각부의 차관 2. 지방항공청장 3.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 및 한국공항공사의 사장 4.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 5. 항공안전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항공안전 정책수립에 필요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현장형 전문가로서 영향력이 인정되며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임기	2년	2년
비고		· 공무원 의제 · 실무위원회 구성 가능 · 협조 요청 가능 · 위원 회피·제척·기피

개정안은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항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도록 하며, 위원회로 하여금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항공기기술기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항공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은 대체적으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³⁾(위원의 구성, 임기, 실무위원회 구성, 위원 제척·기피·

3) 「항공사업법」

제4조(항공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항공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3조제6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공항시설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항공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및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각부의 차관
 2.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사전 검토 및 위원회에서 위임한 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⑧ 해당 심의 대상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⑨ 위원은 제7항이나 제8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전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⑩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피 등)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학적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⁴⁾[위원의 구성(외부 전문가 과반수 이상), 협조 요청, 공무원 의제]와 유사한 구조로 항공안전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안 제6조의2제2항제6호(항공안전 정책수립에 필요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현장형 전문가로서 영향력이 인정되며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는 제5호의 항공안전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국토교통부 의견

항공안전위원회는 정책자문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현재,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를 통해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함에 따라 현행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특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22.7.)」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위원회를 통폐합 중으로 신규 위원회 설치에 곤란하므로, 항공안전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 「공항시설법」

제35조(항공학적 검토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 관계 전문가로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류 충돌 위험평가 시행 근거 마련 (안 제6조의3 및 제6조의4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조류 충돌 예방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6조의3)

또한, 개정안은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기구 설치, 조류 충돌 위험평가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6조의4).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의3(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류 충돌 위험 평가 2. 조류 충돌 발생 현황 및 원인 분석, 조치 사항 3. 조류 충돌 저감 대책 및 야생동물 통제활동 실적 4. 조류 등 야생동물 통제 인력 및 시설, 장비, 교육 훈련,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

현행	개정안
	<u>다</u>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자문을 얻기 위하여 제6조의2에 따른 항공안전위원회에 조류 충돌 예방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류 충돌 예방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2. 지방항공청장 3. 공항운영자 4.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 5. 공군 6. 환경부 7. 농림축산식품부 8.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 예방과 통제 및 위험관리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교수·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9.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 예방과 통제 및 위험관리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10.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 예방과 통제 및 위험관리 관련 시설과 장비, 기술 개발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⑤ 그 밖에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계획 수립 및 조류 충돌 예방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항공청장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매 반기마다 시행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민·군 공용 공항으로서 군에서 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시행하는 공항은 제외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규모의 조류 충돌 예방 전담인력의 배치, 시설과 장비의 확충,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기구를 설치하여 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토대로 해당 공항에 대한 조류 충돌 위험평가를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조류 충돌로 항공기 엔진 및 기체 손상이 발생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조류 충돌 보고를 받아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항공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조류 충돌 위험평

현행	개정안
	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 분기마다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항공청장은 이를 평가 및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과 조류 충돌 예방 실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적정성 평가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 지방항공청장은 공항운영자가 제출한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조류 충돌 위험평가를 평가 및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공항운영자는 지방항공청장이 제6항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한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기한 내에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항공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과 조류 충돌 예방 실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추진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현행	개정안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방콕발 제주항공 2216편은 무안공항 착륙 과정에서 조류 충돌이 발생⁵⁾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사고의 원인 중 일 부라는 지적⁶⁾이 제기되고 있음.

이처럼 조류 충돌은 항공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예방이 중요함. 특히, 최근 5년간 공항별 조류 충돌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운항편수가 적었던 최근 5년간에도 조류 충돌건수가 1,100여 건에 이르고, 조류 충돌 건수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보임.

5) 사조위 보도차고자료(2025.1.25.) 및 사조위 사고조사 예비보고서(2025.1.27.)

다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예비보고서에 따르면 조류 충돌 시점은 분석 중으로 현재 까지 파악되지 않았으며, 항공기는 복행 중 08:58:56초에 조류 충돌로 인해 복행을 하고 있다고 비상선언(Mayday, 3회)을 하였음. 또한, 항공기는 활주로 01 접근 시 조류무리를 확인하고 복행 중 조류와 근접하는 장면이 감시카메라(CCTV)에 확인되었고, 엔진 조사 중에 양쪽 엔진에서 깃털이 발견되었으며, 발견된 깃털과 혈흔을 국내 전문기관에 유전자 분석의뢰한 결과 깃털과 혈흔은 '가창오리' 종으로 파악되었음.

6) 연합뉴스, '사고 원인'은 조류충돌, '참사 원인'은 둔덕...규명 초점, 2025.1.5.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5027500054>

【 공 항 별 조 류 충 돌 현 황 】

공 항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11월까지	계
인천	25	19	35	57	99	235
김포	40	59	57	52	44	252
김해	18	43	47	51	51	210
제주	38	52	33	54	44	221
대구	6	11	9	9	9	44
울산	6	6	4	2	1	19
포항경주	0	3	2	0	0	5
광주	13	7	8	8	7	43
여수	5	3	4	3	2	17
사천	0	1	0	3	3	7
청주	1	10	13	14	10	48
원주	0	0	0	0	0	0
군산	0	1	2	2	2	7
무안	1	0	1	2	5	9
양양	1	4	1	0	0	6
계	154	219	216	257	277	1,123

자료 : 국토교통부

이에 개정안은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류 충돌 위험평가 시행 등을 통해 조류 충돌을 방지하여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계획 수립,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 운영 및 조류 충돌 위험평가는 현재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⁷⁾」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향입법하는

7) 「공항시설법」

제31조(시설의 관리기준)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시설의 보안관리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 등에 관

것으로 보이며, 지난 2월 6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44호, 2022. 11. 8., 일부개정]

제6조(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① 각 공항의 지방항공청과 공항운영자는 공동으로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기적(6개월에 1회 이상)으로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통해 조류충돌 예방대책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민·군공용공항으로서 군에서 조류충돌 대책을 시행하는 공항은 제외한다.

제8조(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① 각 공항의 운영자는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의 조류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전년도 실적과 해당 연도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조류충돌 위험 평가) ① 각 공항의 운영자는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제8조에 따라 수립한 위험관리계획을 토대로 해당 공항에 대한 조류충돌 위험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조류나 야생동물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2. 「항공안전법」 제77조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 한국공항공사의 항공기술훈련원이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재개발원에서 20시간 이상의 조류나 야생동물 관련 교육을 수료하고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한 기준(이하 “시설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시설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시설의 보안관리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10. 19.>

공항시설·비행장시설 관리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0. 공항 및 공항 주변에서의 항공기 운항 시 조류충돌을 예방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4에서 정한 조류충돌 예방계획(오물처리장 등 새들을 모이게 하는 시설 또는 환경을 만들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인원·시설 및 장비를 갖추 것. 이 경우 조류충돌 예방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고시는 「공항시설법」에 근거한 것으로, 조류 충돌 예방 등과 관련하여는 일반적으로 「공항시설법」에서 규율한다는 점에서 「공항시설법」에 개정안의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의 수립 근거를 신설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894호, 2025.2.4.)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한편, 개정안은 안 제6조의2에 따른 항공안전위원회에 조류 충돌 예방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구성을 법률에서 규정고 있음.

그러나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다수의 입법례⁸⁾를 고려하여 그 구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안도

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8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분야별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9조(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⑤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⑨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공무원과 대기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전에 대한 조정·검토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에는 일반적으로 계획 수립 주체, “계획 수립시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둔다는 점⁹⁾에서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대해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정부 의견

1) 국토교통부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관한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하나,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에 관한 근거가 공항시설법령에 있어,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공항시설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법 체계상 타당한 것으로 보임.

2) 법제처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안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법 제6조에 따른 항공안전정책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④ 광역교통위원회에 부칠 안전의 사전검토·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p.267

기본계획은 안 제6조의3에 따른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기본계획’보다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항공안전정책의 목표 및 전략,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운항 안전에 관한 사항(제2항제2호) 등을 포함하는 상위 계획으로 보여짐.

이에 개정안에서 신설하는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약칭하게 된다면 자칫 두 계획 간의 포함관계 등이 왜곡되거나 집행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므로, “기본계획”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약칭을 사용하는 방안(예시: “조류위험관리기본계획”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아울러, 안 제6조의3에서는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정안 통과 이후 집행을 위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수립주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데, 법 제6조제1항에서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것과 같이 가능하다면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580